

## 2 책임강의 및 강사로 지급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4조(책임강의시간) ① (생략)</p> <p>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본 대학 <u>직제규정 제4장 제12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직</u> 또는 입학사정관을 겸할 경우, 해당 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③ 전항의 보직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임교원의 경우 그 직무의 정도에 따라 연간 책임강의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책임강의시간) ① (현행유지)</p> <p>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본 대학 <u>직제규정에 따른</u> 보직 또는 입학사정관을 겸할 경우, 해당 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현행유지)</p> <p>③ 전항의 보직교원 이외에도 <u>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강의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임교원의 경우 그 직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면제</u></p> <p><u>2. 신규부임 2년 이내의 조교수의 경우 3시간 면제.</u></p> <p><u>단, 학과 교과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면제 가능</u></p>	<p>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항목변경 반영</p> <p>조교수 강의 부담 경감 반영</p>